

보도시점 2024. 1. 8.(월) 조간
2024. 1. 7.(일) 12:00

배포 2024. 1. 5.(금) 16:00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1,630원 인상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만원 인상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8만원 인상 -

< 요약본 >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상세본 >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장애인연금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	↑ 3.6%
부가급여	8만 원	9만 원	+1만 원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 원	130만 원	+8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208만 원	+12만 8천 원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방우식 (044-202-3321)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중인 사람
 -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4년 기준)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금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금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금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수급자 현황 : 35.6만 명 (수급률 70%, '23.11월 기준)**